

특정감사

오페라분야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서

2018.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목 차

I. 감사 개요 .....	3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4

# I. 감사 개요

## 1. 감사 배경 및 목적

- 오페라분야 지원사업인 오페라창작산실 및 창작아카데미(오페라분야) 사업의 심사위원 및 강사 선정, 평가방법 등에 있어 문제점 제보 (제보자는 확인 불가, 전 위원장이 감사 요청)

## 2. 감사범위

- 오페라창작산실 및 창작아카데미(오페라분야)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 오페라창작산실 및 창작아카데미(오페라분야)사업의 심사위원, 강사 등 선정, 지원대상 평가 방법 등 적정성 여부

##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4. 17.~5. 4. / 실지감사기간 4. 26(목)~27(금)
  - ※ '18. 2. 5(수) 메일(기획조정부장이 당시 위원장께 받은 인쇄물을 스캔한 PDF)로 제보내용을 접수하였으나 타 감사 진행으로 감사 일정 변경
- 감사인원 : 이윤희 전문위원(전 감사부장), 김영중 전문위원 총 2명
  - ※ 내부감사 전문가인 김영중 전문위원 참여

## 4. 감사 중점사항

- 제보에는 심사위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 등 확인이 불가능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추진한 오페라분야 창작산실 및 창작아카데미 사업의 심사위원 구성, 지원 대상 평가 방법 등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중점 감사함.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 요구사항	비고
1	오페라창작산실 업무 추진 미흡	통보 및 개선 요구	■ ■ ■ ■ ■
2	오페라창작아카데미사업 심의회의결과 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및 부서주의요구	○ ○ ○ ○ ○

#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 통보 및 개선 요구

제 목 오페라창작산실 업무 추진 미흡

관 계 부 서 ■■■■■

내 용

기획조정부를 통해 감사부로 접수된 제보내용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진행한 오페라분야 창작산실(이하 ‘오페라창작산실’) 지원 선정의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가. 2016-2017 오페라창작산실 관련

오페라창작산실은 우수 창작오페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작곡 및 대본 공모, 시범공연지원, 우수작품제작지원의 절차를 통해 당초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표 1】 과 같이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추진 절차

1차년도('16년)		2차년도('17년)			3차년도('18년)
<b>'16 창작오페라발굴지원</b>		<b>'16-'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올해의 신작) 실연심의</b>			
① 작곡가+극작가 공모 및 심의 ('16. 11~12월)	② 창작활동비 지원 ('16. 12월)	③ 실연심의 제작비 지원 ('17. 5월)	④ 실연심의 ('17. 6월)	⑤ 우수작품 제작비 지원 ('17. 11월)	⑥ 우수작품 본공연 ('18. 3월)
22팀 공모 / 3팀 선정	3팀 총 6명에게 각 10백만 원 포상금 지급	4팀 오페라단 각 15백만 원 보조금 지급	1팀 선정 A오페라단 ☆☆☆, ★★★	280백만 원 보조금 지급	A오페라단 공연

※ ③‘실연심의 제작비 지원’부터 2015-20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 최종 우수작 1팀을 포함하여 진행

2016년 창작오페라발굴지원사업으로 작곡가와 극작가가 한 팀을 이루어 지원 신청(22건) 후 1차 서류심의('16.11.25)에서 6팀 선정, 2차 인터뷰심의('16.12.2)에서

3팀을 선정하였다. 1차 및 2차 심사위원은 동일한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 명단과 선정 대상은 【표 2】와 같다.

【표 2】 2016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심사위원 및 선정 대상

1차 및 2차 심사위원 명단			2차 심의 선정 대상		
분야	이름	현직	no	작곡가 / 극작가	작품명
작곡			1		
작곡			2		
극작			3		
극작					
연출					

\* ☆☆☆, ★★★★★ 팀은 15-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 교육생으로도 참여

제보에 따르면 ○○○심사위원이 ☆☆☆, ★★★★★ 팀의 ‘동향 누나’라는 사적인 관계이므로 심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시 사업부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만, ○○○심사위원은 2015-20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 강사(’15년 8월~10월, 10회 강의), 멘토(1차 ’16년 4월 팀 당 4회 멘토링, 2차 ’16년 7월~9월 팀 당 10회 멘토링), 평가위원(’16년 1월 리딩공연평가, ’16년 5월 중간평가, ’16년 11월 최종평가)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 ★★★★★ 팀은 2015-20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 교육생(작곡가와 극작가로 팀을 이룸)으로 참여 중이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 극작가를 2016년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심사위원의 평가표 확인 결과 ☆☆☆, ★★★★★ 팀에 대한 심의회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시행한 2016-20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 실연심의는 2016년 창작오페라발굴지원에서 선정된 3팀, 2015-20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 최종 우수작 1팀, 총 4팀을 대상으로 실연심의를 실시하여 1팀의 오페라단에게 보조금 28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표 3】 , 【표 4】 참고)

【표 3】 2016-20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 실연심의 대상

no	작곡가 / 극작가	오페라단	작품명	비고
1				'16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선정
2				'16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선정
3				'16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선정
4				'15-'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 최종 우수작

【표 4】 2016-20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 실연심의 심사위원 및 선정 대상

심사위원 명단			선정 대상			
분야	성명	현직	no	작곡가 / 극작가	오페라단	작품명
작곡			1			
지휘						
극작						
연출						
평론						

제보에 의하면 2016-20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 실연심의시 2개 단체가 소수점까지 동점으로 공동 1위였으나 최종 선정과정이 수상하게 이루어져 1위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사위원 개별 채점 후 관객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단체가 2개(A오페라단, B오페라단 2개 단체가 89.4점으로 동점)가 되었고, 이에 「2017년도 지원심의 운영지침(2016.12.30. 개정 시행)」의 '동점 시 우선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1위를 선정하였다. 두 개 단체 모두 ①수도권 소재 단체이고, ②등록단체이며, ③직전년도 미지원단체로서 선정 기준 세 번째까지 동일한 조건임에 따라 네 번째 선정 기준인 '④신설단체 추진사업(초기 자생력 제고)'을 적용하여 B오페라단(2005년 창단)에 비해 신설단체인 A오페라단(2011년 창단)을 최종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2017년도 지원심의 운영지침(2016.12.30. 개정 시행) 】

- 동일조건 또는 동점시 우선 선정 기준(아래 순서)
  - ① 지역소재 단체 및 예술인 우선 고려함(지역 고려)
  - ② 등록단체(관련법령 및 사업자등록 등) 우선 고려
  - ③ 직전년도 미지원단체 우선(지원 대상의 균점화)
  - ④ 신설 단체 추진 사업(초기 자생력 제고)
  - ⑤ 초연 및 창작 등(초연·창작의 활성화)

다만, 극작가와 작곡가를 발굴하여 우수 창작오페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연의 목적으로 연계된 오페라단을 기준으로 1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오페라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창작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 동점 시 우선순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작품 개발을 위해 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관객평가점수의 경우 ‘지원심의자료’ 심의기준에는 【표 5】와 같이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이라고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객평가단의 원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원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표 5】 2016-20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 실연심의 세부 심의기준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수월성 (50%)	계획의 이행수준(20%)	○ 실연은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에 부합하는가?
	작품의 발전가능성(30%)	○ 본 공연의 방향성을 적절하게 제시했는가? ○ 무대, 연출 등에 대한 계획은 우수한가? ○ 타 작품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는가?
제작의 실현 가능성 (30%)	예산 및 일정계획(10%)	○ 본 공연의 예산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본 공연까지의 제작 일정 및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참여인력(10%)	○ 창작, 출연, 기획 인력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 창작, 출연, 기획 인력의 확정수준은 어떠한가?
	홍보마케팅(10%)	○ 타깃 관객이 명확한가? ○ 관객개발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가?
작품의 파급효과(10%)	○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본 공연의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가? - 본 공연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기대되는가?	
관객평가(10%)	○ 관객평가단 점수 합산	

### 나. 2017-2018 오페라창작산실 관련

제보에 따르면 2017-2018 오페라창작활동발굴지원 공모사업에 2015-2016 오페라분야 창작아카데미의 강사이면서 멘토였던 ○○○(작곡), ○○○(극작)가 지원신청하고 심사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극작)만 ◇◇◇(작곡)과 함께 지원신청(접수기간 '17.6.1-'17.6.15)하였으며, 1차 서류심의('17.7.7)를 통과하였으나 2차 인터뷰 심의('17.7.21) 때 탈락하였다. 당시 심사위원과 선정대상은 【표 6】 과 같다.

【표 6】 2017-2018 오페라창작활동발굴지원 심사위원 및 선정대상

심사위원 명단			선정대상		
분야	성명	현직	작곡가	극작가	작품명
작곡					
극작					
평론					
연출					
작곡					
극작					
작곡					

### 관계부서 의견

심의회의 전 심의관여 금지(심의회피제도)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였으나, ○○○ 심사위원이 오페라창작아카데미와 관련한 사항이나 심의회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이 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신청사업에 대해 사무처에서 회피를 강제할 수 없어 문제 발생 시 심사위원 책임서약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창작산실 사업의 취지를 살려 평가 기준, 동점 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재정비하고 창작자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면계약서를 면밀히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객평가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방법도 지원신청안내, 지원심의회자료 등에 적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조치할 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강사, 멘토 등을 파악하고 교육생이 심사대상일 경우 해당 강사, 멘토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심의회피제도’의 관련 세부 지침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② 창작오페라 발굴이라는 사업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동점시 우선순위 기준 개선, 창작자 지원 장치 마련 등 오페라창작산실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③ 관객평가점수의 정확한 점수 부여 방식을 지원신청시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지원심의 회의자료에도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통보 및 주의 요구

제 목 오페라창작아카데미사업 회의결과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기획조정부를 통해 감사부로 접수된 제보내용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진행한 오페라분야 창작아카데미(이하 ‘오페라창작아카데미’) 평가 방법의 의혹 제기 에 관한 것으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다.

2015-20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오페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창작오페라 소재를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 1】의 절차로 추진하였다.

【표 1】 사업추진 절차

1차년도('15년)		2차년도('16년)		
① 작곡가, 극작가 공모 및 심의 ('15. 2월)	② 기초창작 및 멘토링 ('15. 4월~)	③ 리딩공연 평가 및 멘토링 ('16. 1월~)	④ 중간평가 ('16. 5월)	⑤ 최종평가 ('16. 11월)
작곡가 4명, 극작가 4명 선정	작곡가와 극작가 4팀 매칭	매칭된 4팀	매칭된 4팀	□□□, △△△ '▽▽▽' 선정

※ ⑤최종평가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 △△△ 팀의 '▽▽▽'는 '16-'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 실연심의 대상

※ ③리딩공연 평가 및 멘토링 단계에서 '16. 2월까지 는 ■■■■■, '16. 3월부터 ○○○○○가 담당

※ 작곡가와 극작가 매칭된 4팀

구분	교육생		작품명
	작곡가	극작가	
1	/	/	/
2			
3			
4			

제보에 따르면 리딩공연평가시 우수작은 ☆☆☆, ★★★의 ‘♫♫♫’였으나, 중간평가시 외부평가위원(♫♫♫)의 의견이 80% 비율로 평가결과에 반영됨에 따라 ’15-’16 오페라창작아카데미 최종 우수작이면서 동시에 ’16-’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 실연심의 대상 작품이 □□□, △△△ 팀의 ‘▽▽▽’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딩공연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때 각 단계별 평가위원은 【표 2】와 같고, 리딩공연평가와 중간평가의 결과가 최종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평가위원의 점수는 동일한 비율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단계별 평가위원

리딩공연 평가위원 ('16. 1월)			중간평가 평가위원 ('16. 5월)			최종평가 평가위원 ('16. 11월)		
분야	성명	비고	분야	성명	비고	분야	성명	비고
연출			연출			극작		
연출			극작					
극작			작곡					
작곡			평론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18조(결재) 제1항에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임전결규정」 별표 2에 의하면 ‘각종 심의, 운영 및 자문위원회 결과보고’는 일반사항인 경우 사무처장 전결, 중요사항의 경우 위원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에서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후 평가 결과보고에 대해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

### 관계부서 의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후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 결재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당시 업무과다로 누락하였다고 밝혔다.

##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지원심의 또는 평가회의 이후 결과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②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에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